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내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관련 조례 위임 확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114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11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출 자 : 정 부
2. 발의연월일 : 2025. 3. 19.
3. 회부연월일 : 2025. 3.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출 자 : 정 부
2. 발의연월일 : 2024. 3. 19.
3. 회부연월일 : 2024.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 ----- ----- -----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1)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 사업, 2)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시설 운영, 3)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법령(법률 22개, 대통령령 40개) 정비를 추진중이며,¹⁾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에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임.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접경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1) 법제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2025.03.18.

※ 붙임 [주요 정비 사례] 참조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② 국가는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축산업·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 3)}

이 때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4) 5)}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방식에 제한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그동안 안보를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곳으로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각종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줄여 자치입법권 및 지방분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50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용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참고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법제처 보도자료, 2025.03.18.)

	법률	내용	소관부처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3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4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밀원식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법률	내용	소관부처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 복지부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1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6	지하수법 제30조의2제2항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1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 가족부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 가족부
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여성 가족부

	법률	내용	소관부처
2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제2항 등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하고, 시장·군수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 교통부
22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준·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해양 수산부